

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8	2019	2020	2021	2022
지방채발행한도액(A)	10,300	10,300	22,400	25,000	22,900
발행액(B)	0	0	0	0	0
발행비율(B/A*100)	0	0	0	0	0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7.1, 행안부장관→자치단체)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*한 기본한도액(7.15, 자치단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

* 지방재정법 개정('20.4.)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

